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고동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69

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고동진·주호영·엄태영

박정훈 • 조지연 • 박준태

김성원 • 박덕흠 • 박충권

서범수 · 서일준 · 이달희

박성훈 • 강대식 • 서명옥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(아동·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)를 제공하고,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·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.

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,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한국어 거점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 기관을 설립·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

위탁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 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생활 정착 교육 지원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조의2(다문화가족 등에 대한
	생활 정착 교육 지원) ① 국가
	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
	의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
	서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
	할 수 있도록 한국어 거점 교
	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기관
	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	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
	1항에 따른 기관의 설립 및 운
	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
	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
	관의 설립 및 운영과 비용 지
	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	령으로 정한다.